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18 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5.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하여
- 기 설립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 (제2조)
- 사업의 범위를 전통의약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서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 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산업의 연구개발·창업보육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센터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함 (제5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의약품산업 등”을 삭제하고,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2조중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제10호, 제4조제1항제12호,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중 “지원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5조중 “지원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하고, 다음 앞에 “생명과학과 관련한”을 삽입하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2.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
3.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사업
5.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의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및 제10조중 “지원센터가”를 “재단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